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

세부사업명	원예시설현	대화				세목		치단체 본보조				
내역사업명	고추비가림	재배시	시설 지원			예신 (백만원		3,360				
사업목적	•	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	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관수시설(? 고추비가림		수, 스프링클리 시설 지원	너, 관정), 환	경관리시설	널(자동개폐기	기, 차광망)	을 포함한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	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5조(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		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	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										
지원한도		기준면적: 시설면적 660m² 이상 기준단가: 22천원/m²										
재원구성 (%)	국고	20	지방비	30	융자	30	자부담	20				
асн	구 분 합 계		2017년 40,000	2018년 32	,000	2019년 28,000	2020	남: 백만원))년 16,800				
연도별 재정투입	국 고		8,000	6	,400	5,600		3,360				
현황	융 자		4,800	3	,840	3,360		2,016				
	지방비		12,000		,600	8,400		5,040				
	자부담		15,200	12	,160	10,640		6,384				
담당	당기관		담당	과	담당	당자	연락	낚처				
	산식품부 자체		원예산 시·군·자치구		사무관	이남윤 -	044-201-2236 -					
신청시기			매년 1월		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							
관련자료			농림사업정	성보시스템(A(GRIX), 사업	시행지침서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
 - * 단,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
 - 농업인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 - 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(농식품부 훈령 제337호)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
 -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(의무자조금 도입시)
-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함)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(평가 시 가점 부여)
 - 상반기(사업연도 6월 이전)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
 -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
 - 고추종합처리장·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
 -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
 - 친환경농산물·GAP 인증, 농작물재해보험 가입

3. 지워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

- 관수시설(점적관수, 스프링클러, 관정 등), 환경관리시설(자동개폐기, 차광망, 환풍기 등)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*(난방·보온시설 제외)
 - * 「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(농촌진흥청)」 또는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 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(농식품부 고시 제2019-44호)」의 "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"에 적합한 시설
 - ※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'ICT 융복합 확산사업'으로 지원 가능
-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
 - 다만,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
 - *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최대 2회(2년)로 제한

4.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

○ 국고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
○ 지원형태 : 국고(보조 20%, 융자 30%)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
*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.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

- 융자금리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
**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
○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

○ 사업시행기관 : 시장·군수

-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·군에 신청
 - * 해당 시·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농가단위 지원면적: 시설면적 660m² 이상
- 사업비 기준단가: 22천원/m²
 -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·확인(사업비 산출근거,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)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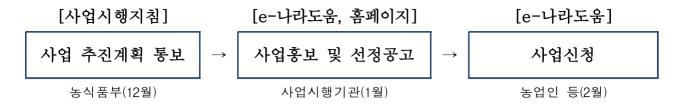
사업추진체계

П



※ 사업신청, 대상자선정, 자금신청·배정,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병행 관리

1. 사업신청단계

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시·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('19.12월)

시·도

○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"이라 함)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('19.12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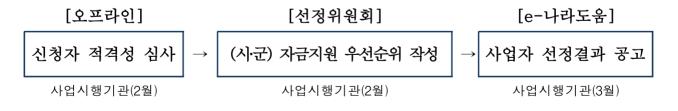
시·군

-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, 신청방법, 제재사항(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) 등 안내, 교육 및 홍보 병행('20.1월)
-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 접수검토('20.1월)

사업대상자

-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·군 제출('20.1월)
-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(지역 농·축협 포함)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
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시·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'20.3월)

시·도

-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(별지 제3호 서식)를 농식품부에 보고 ('20.2월)
-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확정 통보('20.3월)

시·군

-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·요건에 따라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('20.2월)
- 시·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('20.3월)
 - 지원계획,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

3.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

《세부계획 수립》

사업착수

○ 시장·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,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

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

-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·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제출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·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, 시·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,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·도에 보고
 - 시·도지사는 시·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

○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

《자금배정》
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,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
- 시·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(재연장)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

시·도, 시·군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, 자금 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
 - 기계·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
- 시장·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(국고·지방비·자부담 등)에 따라 환수 조치
 - *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
- 시장·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 (지침 및 영수증·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)를 검토 후 기성고(준공) 확인서 발급
-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·도에 제출하고, 시·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 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·도에 제출하고 시·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
-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」등에 따라 수행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 「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53조(사업자금집행의 원칙)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
 - * 「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(100%)이 원칙
 -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·자부담능력 등을 고려, 자부담 비율 (20% 이상)·금액(2억원 이상)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%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
 -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·융자·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○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

농협은행(농·축협)

-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·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(준공)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
 -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·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
-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
 - *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
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,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

시·도, 시·군

○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,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

사업대상자

○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

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사업수요조사

- 시·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('20.3월)
-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·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

2.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신청서 제출기관: 시장·군수
- 신청자격: '20년도 신청자격 확인(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)
 - * '20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'19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

11 2 1	1 1 1		1							
	고추	비가	림재배	시설지	1원 시	나업신	청서			
사업자명 (개인·법인명) 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		농업경영	를 체				
주소					0 12					
일반전화			휴대전	호			전자우편 (e-mail)			
	비닐ㅎ	하우스	노지 저	H HI			(=		계	
평산시실		m²		m²		m²		m²	m	
	구분	시·도	시·군	구	읍·면	리·동	지번	부지번	면적	
	계								m	
신청필지 사업 계획	농지1								m	
	농지2								m	
	농지3								m	
	농지4								m	
	농지5								m	
게이 ㅈ 다	7	4	국고	1	지방비		융자		 자부담	
세천모道 (백만원)			1-						7110	
관이 본인의 아	래의 개인	!정보를 ㅊ	취리하는 것	· 에 동의합	합니다.		겁 신청과	관련하여	사업대상제	
							등의합니다			
			20 년	현 월	일					
	신	청자			(서	명 또는	인)			
				시 장						
	사업자명 (개인·법인명) 생년월일 (법인번호) 주소 일반전화 생산시설 대원조달 (백만원) 다농림축산식- 라이 본인의 아래	사업자명 (개인·법인명) 생년월일 (법인번호) 주소 일반전화 비닐경 상시설 구분 계 농지1 신청필지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대만원) 기상리 보인의 아래의 개인 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으 없는 기가 있다.	자업자명 (개인·법인명) 생년월일 (법인번호) 주소 일반전화 비닐하우스 ㎡ 구분 시·도 계 농지1	사업자명 (개인·법인명) 생년월일 (법인번호) 주소 의반전화 대상 기상	### ### #############################	기구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지수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사업자명 (개인'범인명)	###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

수수료 구비서류: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 1부 없음

구청장

[별지 제2호 서식] 사업계획서

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

1. 일반현황

가. 신청자 개요

사업자명 (개인·법인명)		대표자명	
생년월일 (법인번호)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
주소			
일반전화	휴대전화		전자우편 (e-mail)

나. 고추재배 현황

(단위: m²)

štal	시설별 재배형태									
합계	비닐온실	비가림시설	육묘·육종장	노지재배						
m²	m²	m²	m²	m²						

2. 사업계획

가.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

구분	시·도	시·군·구	읍·면·동	지번	부 지번	면적	받기반정비사업지구 ·사업계획지구 여부
농지1						m²	
농지2						m²	
농지3						m²	
농지4						m²	
농지5						m²	
계	_	_	_	_	_	m²	

나. 세부 사업내역

형태	규모(m²)	소요액(백만원)	추진시기(기간)	계약재배 물량
□ 단동 □ 연동				

다.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

규격명	폭(m)	높이(m)	설치간격(cm)	서까래 (ф(mm)×t(mm)@cm)	가로대 (Φ(mm)×t(mm))

라. 자금 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	자금 조달계획									
총 소요액	정부보조	융 자	지방비		자 부 담					
	9TII	8 4	7101	소계	자기자금	외부차입				

3. 우선지원 요건

- 가.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: □ 여, □ 부
- 나. 계약재배 실적(최근 3년 평균)

생산량	계약재배 물량	고추종합처리장 농협			
톤	톤	톤	톤		

마. 기타

친환경농산물인증	GAP인증	농작물재해보험 가입				
20 년도 인증	20 년도 인증	가입기간: 20 년 ~ 20 년				

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자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

	기본	현황				,	나업 :	계획			우	선지	원 요	건	해당	(O,	X)	人	·업비	집형	뱅계획	(천원	1)
																			국	비	지빙	}비	
시 도 명	시군명	사 업 자 명	대 표 자 명	시 도	시 군 구	아마마	리	지 번	필 지 면 작 (m²)	설 치면 적(m²)	상반기준공가능	발작물고oko경 80 체	밭기 반정 비사업	계 약 재 배	친환경농산물	G A P	농 <u>작물재해보험</u>	합 계	보 조	융 자	도비	시 군 비	자 부 담
												^1											

^{*}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(엑셀 등) 활용 작성·제출

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

	사업자명 (개인·법인명)			대표자명		
	생년월일 (법인번호)		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	
일반 현황	주소				(반드	시 상세주소 기재)
	일반전화번호			휴대전화번호		m²
	전자우편 (e-mail)			사업규모		
	구분	사업내용	규모·수량 (m²)	소요9 (백만원		추진시기 (기간)
		합계	,		_,	() = /
		농지1				
	rt÷	농지2				
	당초	농지3				
		농지4				
사업 계획		농지5				
- 11 1	변경	합계				
		농지1				
		농지2				
		농지3				
		농지4				
		농지5				
	변경 사유 낭세히 작성)					
	위와 같이 시설원	년예 분야 지원사업·	을 변경신청 하	오니 승인하여 주	^도 시기 바랍니다	·.
		2	0 년 월	일		
				시청	Σ Ι:) (서명 또는 인)
004	·l장·군수·구청?	당 귀하		201	1. 0 0 0	(18 46 6)
	업대상자는 사업변 네 변결결과 녹실	경 필요 시 해당 시 푸부 보고	장·군수 승인 =	후 추진, 시·도지시	나는 시·군 승인	사항 검토 후 지체

[별첨: 참고]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- 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- 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3.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-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- 1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)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- 2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)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- 3. (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- 4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-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